

제 호

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

1. 기관명:
2. 대표자:
3. 소재지:
4. 검정대상 농업기계:
5. 지정 유효기간: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

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
및 제19조의4에 따라 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직인